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하나마이크론㈜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하나마이크론㈜ 과징금 13,900만원

□ **(수정의결)** 경고 조치*

* 적시에 수시공시된 점, 외부평가를 받기 용이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결과를 '중대'가 아닌 '경미'로 보아 조치 원안인 '과징금 1억 3,900만원 부과' 조치를 '경고' 조치로 수정의결함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'21.8.25. 이사회에서 2020년말 자산총액(7,648억원)의 19.6%에 해당하는 금액(1,500억원)에 대하여 유형자산(반도체 Test 설비)을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,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('21.10.19.)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7호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